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4. 9.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6. 11. 신영대의원 등 15인

나. 회부일자 : 2024. 6. 12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제416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회의(2024.7.24)

상정 · 제안설명 · 검토보고 · 대체토론 · 소위원회부

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4.8.28)

상정 · 축조심사 · 의결(수정가결)

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전체회의(2024.9.3)

상정 · 소위심사보고 · 축조심사 · 찬반토론 · 의결(수정가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신영대 의원)

대학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

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직업 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(이하 “계약학과등”이라 함)를 설치할 수 있음.

지방대학 역시 취업률 제고 및 산업체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학과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또는 첨단 산업과 관련한 계약학과등은 주로 수도권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.

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넘어 지역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대학의 취업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: 천우정)

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.

계약학과등은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 8조에 따라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정원 외로 개설·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 또는 학과임.

지난 2022년 7월 교육부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‘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’을 발표하면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서 계약학과 규제 개선, 계약정원제 도입·운영 등을 제시한 바 있음. 그러나 당시 계약학과 의 수도권 쏠림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대책은 수도권 대학 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되었음.

동 법안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.

교육부는 동 법안의 입법 취지 및 내용은 타당하나,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는 기본적으로 산업체등이 자율적으로 산업교육기관에 필요한 교육을 요구·의뢰하여 운영되는 학과로 이러한 제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, 조문내용을 입법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.

4. 대체토론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문정복)

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계약학과 신설에 대한 지원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수정하여 의결함.

6. 찬반토론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수정가결

8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 심사내용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※ 심사보고서 불입서류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
수정안 1부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4. 9.

제 안 자 : 교육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계약학과 신설에 대한 지원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수정함(안 제16조).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6조제4항 중 “우선적으로 「산업교육진흥」을 “「산업교육진흥」으로, “하여야 한다”를 “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6조(국가 등의 지원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6조(국가 등의 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에 우선적으로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</u>	제16조(국가 등의 지원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산 <u>업교육진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할 수 있다.</u>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에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국가 등의 지원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6조(국가 등의 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에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